#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2129

발의연월일: 2020. 7. 17.

발 의 자:정청래·김영주·김경만

최혜영・황운하・아주진비

박성준 • 전혜숙 • 남인순

양원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립학교는 우리 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 상 교원이 비위 등으로 해임 및 징계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할 충분한 사유가 있어 관할청이 임용권자에게 해당 교원의해임 또는 징계를 요구하더라도 해당 사립학교 소속의 교원징계위원회 등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 심의를 하지 않더라도 임원승인을 취소하는 등의 강제규정이 없어 교원 징계에 대한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구조임.

이에 관할청의 징계요구 대상자를 학교의 장 및 교직원까지 확대해 사립학교 임원 승인 취소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 사립학교의 공공성 과 책무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20조의2제1항제6호). 법률 제 호

##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립학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6호 중 "학교의 장"을 "학교의 장 및 교직원"으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0條의2(任員就任의 承認取消)	第20條의2(任員就任의 承認取消)
① 任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	①
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管轄廳은 그 就任承認을 取消	
할 수 있다.	<u></u>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관할청의 <u>학교의 장</u> 에 대한	6 <u>학교의 장 및 교직</u>
징계요구에 불응한 때	<u>원</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